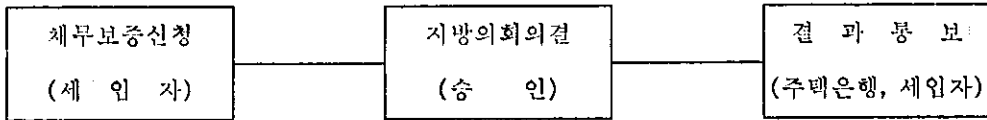


○ 보증절차



○ 채무보증 내용

-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문제가 발생된 경우로서
- 주택은행의 복축장 발부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 여부를 관한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마. 기타사항

-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융자금 분을 관한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년 4월 28일 제출

(95년 4월 28일 서방만위원외 9인 제출)

나. 회 부 인 자 : 95년 4월 29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95년 5월 1일)

라. 의 결 인 자 : 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95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20조의 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정수가 41인 이상의 경우에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수가 5개 이내로서 부천시의회 의원정수가 이에 해당되어 관계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4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함(안 제2조)
- “총무위원회”소관에서 “재무국”을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함(안 제3조제2항제2호)
- “사회산업위원회”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에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중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함(안 제4조제1항)
-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94. 3. 16 제정)및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3.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합리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상임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집행부의 정원 증감은?		○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직원만 요구하면 됨	

5. 토론요지

가. 찬성 : 만장일치

나. 반대 : 해당없음

6. 소위원회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0
의 결	95. 5. 30
년 월 일	(제38회)

발의년월일 : 1995. 4. 28

발 의 자 : 서병만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94. 7. 6자로 개정됨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소관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4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함(안 제2조)

○ “충무위원회”소관에서 “제무국”을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 “제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소관을 “제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함(안 제3조제2항제2호)

○ “사회산업위원회”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에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위

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함(안 제3조 제2항제3호)

- "도시건설위원회"소관중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함(안 제4조제1항)
-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94. 3. 16제정)및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3명 이내
2. 재무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보건사회위원회 12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12명 이내
5.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중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재무경제위원회

제무국, 지역경제국, 사업소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보건사회위원회

보건사회국, 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중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에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을 “제무경제, 보건사회”로,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5명이내”를 “3명이내”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년 6월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5명 이내 2. 사회산업위원회 15명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15명 이내 4.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3명 이내 2. 제무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보건사회위원회 12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12명 이내 5.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

현행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②<u>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u> 1. <u>총무위원회</u> <u>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중(시립도서관, 시민회관)소관에 관한 사항</u> 2. <u>사회산업위원회</u> <u>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중(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노동복지회관)소관에 관한 사항</u> 3. <u>도시건설위원회</u> <u>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중(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에 관한 사항</u> 4. <u>의회운영위원회</u> 가. <u>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u>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u> 1. <u>총무위원회</u> <u>기획실, 총무국, 사업소중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u> 2. <u>재무경제위원회</u> <u>재무국, 지역경제국, 사업소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 3. <u>보건사회위원회</u> <u>보건사회국, 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u> 4. <u>도시건설위원회</u> <u>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중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 5. <u>의회운영위원회</u> 가. <u>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u> 다. <u>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	개정안
며, 충무, <u>사회산업</u>,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생략) ③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u>5명이내</u>로 구성한다.	... 재무경제, 보건사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②(현행과 같음) ③..... <u>3명이내</u>